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sup>1)</sup>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의 선제적, 적극적,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법률체계의 구조 및 특성, 청소년복지관련 통계 현황,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나타난 청소년복지정책 방향, 독일·미국·일본의 청소년관련법 현황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의무 법체계 내 포함, 지역사회 역할 강조, 복지지원 내용 후기 청소년기 확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립·진로지원 서비스 내용 개발·포함,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규정 마련, 정신보건 분야 지원 사항 명시, 건강검진 이후 치료 개입 등에 관한 사항 명시, 다양한 방식의 전방위적 복지지원 내용 포함, 온라인·오프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근거 마련 및 포함, 비밀누설시 엄벌주의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지역규모별 설치기준 마련 및 규정 포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 의무성·강제성 강화, 법체계 구성 보완, 청소년복지 지원 내용 세부사항 구체화 등을 제안함. 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의 보편적 복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을 복지수혜 대상이 아닌 능동적 자원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중심을 ‘복지’가 아닌 ‘지원’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고유과제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발제·요약한 것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청소년인구(9~24세)는 출산율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높은 교육에 대한 전국가적 열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심리·정서·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70%(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안팎의 수준을 나타내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음.
- ▶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진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은 보다 복잡다단해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방위적 복지지원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검토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 이에 본 고에서는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행연구 고찰, 선진외국(독일, 미국, 일본) 사례 검토,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제안을 실시하였음.

## 2. 연구결과

### ▶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하며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법률의 범위에서 규율되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함.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ㄱ) 본칙: 총칙, 해당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실체 규정), 보칙, 벌칙, (ㄴ) 부칙: 시행일, 유효기간,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법제처, 2019).
- 총칙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목적 규정, (ㄴ) 정의 규정, (ㄷ) 해석 규정, (ㄹ)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ㄴ)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ㄷ)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임. 실체규정에 규정되는 내용들은 (ㄱ) 허가, 특허, 인가, 등록, 신고, 지정, 인허가의제, (ㄴ) 결격사유, (ㄷ) 과징금, 부담금, 연체금과 가산금, (ㄹ) 보조·출자·출연, 재정·회계제도, 기금, (ㄴ) 자격부여, 외국인의 지위, (ㄷ) 위원회, 특수법인, (ㄹ) 행정쟁송임. 보칙규정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수수료, (ㄴ) 출입검사와 질문, 보고의무, (ㄷ) 청문, (ㄹ) 권한의 위임·위탁, (ㄴ) 직무대리, 행정업무의 대행, (ㄷ)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ㄹ)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임. 벌칙규정은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형벌, (ㄴ) 과태료임. 부칙규정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한 조치,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일반적 규정

순서는 (ㄱ)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ㄴ)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ㄷ)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ㄹ)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임. 법령 입안에 관련한 헌법 원칙으로는 (ㄱ)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ㄴ) 평등의 원칙, (ㄷ)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ㄹ) 적법절차의 원칙, (ㄴ) 최소보장의 원칙이 있으며,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원칙으로는 (ㄷ) 명확성의 원칙, (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ㄹ) 법률(의회) 유보의 원칙, (ㄷ) 죄형법정주의, (ㄷ) 조세법류주의가 있음(법제처, 2017, 2019).

#### ▶ 청소년복지관련 통계 현황

-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0만 9천명이며 9~24세 청소년인구는 약 876만 5천명으로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0%임. 총인구가 2028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하는 데 반해 청소년인구(9~24세)는 1982년 정점(1,420만 9천명)을 찍은 후 출산율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2018년 총 사망자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1,910명으로 전체 약 0.7%를 차지함. 청소년 사망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등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62.3%를 차지하며(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기준 10~19세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35.7%를 차지함(통계청, [kostat.go.kr](http://kostat.go.kr)).
-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2018년 비만군(과체중, 비만) 학생 비율은 25.0%로 전년 23.9%보다 1.1%p 증가하였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2018년 기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12~24세 청소년'은 4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7.1%로 전년대비 2.0%p 증가함(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2016년 3.7%로 이는 아동(0~17세)수로 환산할 때 2016년 기준 약 33만명에 해당함. 상대아동빈곤율은 2016년 7.2%로 약 60만명에 해당함(여성가족부, 2018).
- 최근 들어 이혼이나 미혼가구의 증가 등으로 일반가구 중 한부모(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0.9%로 약 215만 가구에 달함(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8년 초중고 재학 다문화청소년은 12만 2천명으로 학령인구 중 2.2%를 차지하며 다문화학생 중 초등학생의 비중은 76.1%, 중학생 14.8%, 고등학생 8.7%, 각종 학교 학생은 0.4%임. 전체 학생수와 학령인구(6~12세)는 감소추세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은 최근 6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가족간 갈등과 가족해체 가속화로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적 가출과 반복적 가출이 늘어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 청년기로의 전이와 관련하여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률은 69.7%이며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30.7%로 전년대비 4.0% 하락하였음. 2018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7%이며 실업률은 9.5%임(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2017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는 414만 5천명에 달하며 청소년 중 구직단념자는 8만 3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8).

####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나타난 청소년복지정책 방향

-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기반하여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적 차원의 중장기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으로 활용하여 왔으며(여성가족부, 2018) 현재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해당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책목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등
  - [정책목표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지원,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등
  - [정책목표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지원 마련 등
  - [정책목표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등

####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구성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총 10개의 장 45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이래로 법 16회 제·개정, 시행령 25회 제·개정, 시행규칙 19회 제·개정 등 사회적 요구 또는 정부조직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소폭 또는 대폭 변화함.
- 2019년 10월 기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10개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나뉘어져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 ▶ 선진외국 사례

- 독일에서 아동·청소년지원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함. 청소년청은 급부제공과 그 밖의 과제에 주요한 기능을 두고 있음. 청소년지원원은 사회보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체사회,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됨. 1990년에 청소년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이 독일 사회법전 제8권에 함께 통일적으로 편입되었음.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지원을 미성년자에 제한하지 않고 27세 미만의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음. 또한 독일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존재함.
- 미국에서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은 요보호 아동부조, 위탁돌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 위기가족과 조부모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됨. 부서간 협력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연구와 평가를 강조하고,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
-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법제도 보다는 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2009년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맥락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됨. 규제를 목적으로 한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는데 반해 지원 또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느슨한 형태로 설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청소년고용 촉진법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기본적으로 35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45세 미만의 자까지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남.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청소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함.

#### ▶ 전문가 심층면접

- 청소년 복지 또는 관련법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학계·현장 전문가(교수·연구원·공무원)를 대상으로 각각 2시간 이내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제시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제·개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선방안 도출 필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이 중기(13~18세) 청소년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 개선 필요, 법률간의 지원 범위나 내용의 중복 사항에 대한 고려 필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규정의 구체화 필요, 「청소년기본법」과의 관련성 고민 필요, 자립 지원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시설간 서비스 불균형의 심각성 해소 필요, 청소년복지 지원 내용의 구체화 필요,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성 포함 필요 등

### 3. 정책제언

- ▶ 연구결과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방향(안)을 표로 제시하고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방향(안)

| 항목                      | 개정내용                                                                                                                                                                                                                                                                                         |
|-------------------------|----------------------------------------------------------------------------------------------------------------------------------------------------------------------------------------------------------------------------------------------------------------------------------------------|
| ①<br>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단위 - 지방단위 청소년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이 내용을 법 체계 상에 포함(※독일의 청소년청 사례 참고)</li> <li>•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의무를 법체계 내에 포함</li> <li>•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및 업무분담에 관한 세부 사항 명시</li> <li>•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li> </ul>                                           |
| ②<br>복지대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대상 연령확대(후기청소년 포함)</li> <li>• 연령 확대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립, 진로지원 서비스 내용 개발, 포함 필요(※ 청년기본법과의 관련성 유의)</li> <li>• 외국국적 청소년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 사항 제시</li> <li>•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및 규정 마련</li> </ul>                                                      |
| ③<br>복지의 추진방법<br>및 양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처간 협력 사업 개발 근거 마련<br/>(※ 미국의 비행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국방부 운영 프로그램 사례 참고)</li> <li>• 정신보건 분야 지원에 대한 구체화</li> <li>• 건강검진이후 치료 개입 등 명시</li> <li>•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수준과 양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li> <li>• 상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전방위적 복지지원 내용 강조 필요</li> </ul> |
| ④<br>자립지원의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 분야의 정의 및 구체적인 내용 포함</li> </ul>                                                                                                                                                                                                                 |
| ⑤<br>정보제공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오프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근거 마련</li> <li>• 단, 정보제공 관련사항 누설시 엄벌주의 강화</li> </ul>                                                                                                                                                                             |

| 항목                                   | 개정내용                                                                                                                                                                                                                                                |
|--------------------------------------|-----------------------------------------------------------------------------------------------------------------------------------------------------------------------------------------------------------------------------------------------------|
| ⑥<br>청소년복지시설<br>지역규모별 설치<br>의무 기준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규모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및 법적 설치 규정 명시<br/>(※ 청소년수련시설 배치 기준과 같은 지역별 배치 기준 명시 필요)</li> </ul>                                                                                                                    |
| ⑦<br>복지지원의<br>의무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복지 지원법」 조항의 의무성, 강제성 강화(예: 할 수 있다→해야 한다)</li> </ul>                                                                                                                                                      |
| ⑧<br>법체계 구성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자체 책무 → 일반/위기/특별지원청소년 영역 지원 이용 → 기관 및 시설 내용’ 순으로 법체계화</li> <li>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통해 청소년복지지원 내용의 세부사항 구체화</li> <li>사업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성 강화</li> <li>정의,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 등 법의 구성 범주 간 균형 고려 필요</li> </ul>             |
| ⑨<br>가출분야 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부분 특화 영역으로 확대</li> <li>가출 청소년 대상별 특화 센터 개발</li> </ul>                                                                                                                                        |
| ⑩<br>타법과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과 법무부 예방사업과의 차별화, 구체화</li> <li>타부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 필요(장기적 접근)</li> <li>아동복지법과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li> </ul>                                                                             |
| ⑪<br>장기적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통합(※ 독일 사례 참조)</li> <li>청소년을 복지수혜대상이 아닌 능동적 자원으로 보는 방향으로의 장기적 변화 필요</li> <li>「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중심이 ‘복지’가 아닌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장기적 변화 필요</li> <li>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의 보편적 복지 비중 지속적 확대</li> </ul> |

#### ▶ 자립 조항의 포함

- ‘자립’에 관한 사항이 법조항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에서 나타난바 대로 ‘자립’은 최근 아동·청소년·가족복지 지원 영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임.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을 위한 조문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추가하되 「청년기본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 청소년복지에 관한 협력 의무 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은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보호자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나 있는 만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소년복지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구동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부처, 지역사회, 보호자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 건강검진 관련 규정 강화

-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신체적 영역 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이후 치료나 조치 등도 법조항에 규정되어야 함.

- 건강진단 및 진단 결과의 분석, 공개 금지에 관한 사항 또한 신체적 부분은 물론 정신적 영역까지도 확대되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복지시설 내용 구체화 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마련의 근간이 되었던 청소년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연간 제공되는 청소년사업 안내 내용 중 법에 포함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법 조항에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가출의 조기발견 등을 신규 조항으로 포함시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조기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의 유형화를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계수치 상에서 '쉬었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무업·무직형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단, 이를 위해 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시책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 계획될 필요가 있음.
- 이제까지 긴급하게 지원하는데 그쳤던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발굴방법과 함께 지원 이후 다시 시급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방안을 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 적극적인 발굴, 예측, 사후관리 내용 보강 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반에 걸쳐 '서비스 지원과 개입'에 초점을 맞추었던 현행법의 방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발굴과 예측,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조항이 추가 또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 그 예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도 6개월~1년 가량의 시설 생활 후 퇴소한 청소년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청소년복지 지원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아동복지법」과의 서비스 격차 해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소년관련 조직 명칭 통일 또는 관련 사항 명시, 지원과정과 단계의 구체적 보강, 청소년복지 관련 웹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 축적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문헌

법제처(2017). 법령입안·심사기준. 세종: 법제처.

법제처(2019). 2019년 제2기 법제실습과정(보건·복지분야). 세종: 법제처.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_지원법](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_지원법)

통계청, <http://www.kostat.go.kr>